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 온천수급수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

| | |
|------------|-----|
| 의 안 번 호 | 221 |
|------------|-----|

제출년월일 : 2001. 11.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정이유

영주시 풍기창락온천원보호지구 온천수의 공급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천수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풍기창락온천원보호지구내로 함(안 제4조)
- 나.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와 온천수공급계약체결자로 함(안 제5조)
- 다. 온천수의 공급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월전에 계속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온천수의 사용료, 온수계량기손료 및 시설분담금을 정함(안 제7조, 제9조, 제11조 및 별표1 내지 별표4)
- 마. 온천수의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가. 관련법령(발췌) 1부.
- 나. 입법예고 결과 1부.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영주시 풍기창락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굴착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온천”이라 함은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일원의 온천원보호지구내 영주시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구역을 말한다.
2. “온천이용자”라 함은 온천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으로부터 온천이용허가를 득한자를 말한다.

제3조(공동급수권자) 온천수의 급수권은 시장이 가진다.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풍기창락온천원보호지구내로 한다.

제5조(급수대상)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이 조례 시행전에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와 온천수 공급계약 체결자로 한다.

제6조(공급계약) ①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와 기간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의 사용요금
 6.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온천수 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월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되기 전의 급수시설

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온천수 사용료는 【별표 1】의 업종구분표에 따라 종별사용량에 대하여 【별표 2】의 요금표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

제8조(준용) 온천수의 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영주시 수도급수조례를, 사용료·가산금·수수료·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온수계량기 손료) ① 온천수 사용자에 대하여 온수계량기 손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온수계량기 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10조(계량기의 훼손, 망설 등에 대한 책임) 온수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온천이용자의 부담으로 시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분담금) ①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정지 및 제한) ① 공동급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월이내의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공동급수권자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급수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체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온천수를 판매한 자
 8. 영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관계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자
 11. 급수장치의 고장 등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지 아니하여 온천수를 누수 시킨 자
 12.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 ②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할 경우 제수변 설치전에는 계량기 인입전에 봉인하고 제수변 설치 후에는 봉인 급수정지하며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한다.
- ③ 급수권자는 온천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2. 급수정지기간을 경과한 후에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득이 급수장치를 철거하여야 할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종구분표

| 종별 | 내용 | 비고 |
|-------|-------------------------|----|
| 욕장 1종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 |
| 욕장 2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에 설치된 목욕장 | |
| 욕장 3종 | 숙박업소 객실에 온천수가 공급되는 목욕시설 | |
| 욕장 4종 | 공공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설치한 욕장 | |

【별표 2】

온천수 사용 요금표(월)

(톤/월)

| 요금 급수구분 | 기본요금 | | 초과요금 | | | | | |
|------------|--------------------------|------------|--------------------------|------------|--------------------------|------------|--------------------------|------------|
| | 사용량 (m ³) | 사용료 (원) | 1단계 초과 | | 2단계 초과 | | 3단계 초과 | |
| | | | 사용량 (m ³) | 사용료 (원) | 사용량 (m ³) | 사용료 (원) | 사용량 (m ³) | 사용료 (원) |
| 욕장 1종 | 1~ 1000 | 390 | 1,001~ 1,500 | 510 | 1,501~ 2000 | 630 | 2,001 이상 | 750 |
| 욕장 2종 | 1~ 1000 | 940 | 1,001~ 1,500 | 1,120 | 1,501~ 2000 | 1,300 | 2,001 이상 | 1,480 |
| 욕장 3종 | 1~ 30 | 530 | 31~ 50 | 660 | 51~ 100 | 900 | 101 이상 | 1,000 |
| 욕장 4종 | 1~ 30 | 400 | 31~ 50 | 600 | 51~ 100 | 740 | 101 이상 | 790 |

【별표 3】

온수계량기 손료(월)

(개소당)

| 구 분 구 경(mm) | 손 료 (원) | 비 고 |
|----------------|---------|-----|
| 20 | 4,150 | |
| 25 | 5,120 | |
| 40 | 5,830 | |
| 50 | 7,370 | |
| 65 | 7,890 | |
| 80 | 8,340 | |
| 100 | 9,250 | |
| 125 | 10,430 | |
| 150 | 17,930 | |
| 200 | 19,230 | |

【별표 4】

온천수 시설분담금(구경별)

| 구 분 구 경 | 금 액 (원) | 비 고 |
|------------|------------|-----|
| 20미리 이하 | 2,000,000 | |
| 25미리 이하 | 2,800,000 | |
| 40미리 이하 | 4,500,000 | |
| 50미리 이하 | 6,500,000 | |
| 65미리 이하 | 8,500,000 | |
| 80미리 이하 | 11,000,000 | |
| 100미리 이하 | 17,000,000 | |
| 150미리 이하 | 25,000,000 | |
| 200미리 이하 | 30,000,000 | |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관련 법령(발췌)

【온천법】

제16조(온천의 공동급수) ①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자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급수 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입 법 예 고 결 과

- 조례명 :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안)
- 예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영주시보 제307호(2001년
8월 30일)에 게재
- 예고기간 : 2001년 8월 30일 ~ 2001년 9월 18일
- 의견제출여부 : 없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221호
- 의 안 명 :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
- 해당부서 : 도시교통과

2. 제안이유

온천원 지구에서의 수질보호와 온천수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골자

- 가. 온천수의 급수구역을 정함 (안 제4조)
- 나. 온천수의 급수대상을 규정함 (안 제5조)
- 다. 온천수의 공급계약 기간과 공급계약 체결규정 (안 제6조)
- 라. 온천수의 사용료, 온수계량기 손료 및 시설분담금을 정함
(안 제7조, 제9조, 제11조)
- 마. 온천수의 급수정지 및 제한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4. 검토의견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을 검토한 바,

온천수의 급수구역내에서의 급수권자와 공급받을자의 자격요건, 급수에 따른 시설분담금, 사용료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온천수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도록 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01. 11.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수